

의안번호	제241호
의결연월일	2024. 1. 12

-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1. 3. 박중수 의원 외 4인
- 회 부 일 자 : 2024. 1. 5. 행정복지위원회
- 상 정 일 자 : 2024. 1. 12.

제297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대표발의자 : 박중수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주민 걷기 활성화 지원을 통한 건강 환경조성 및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활성화로 군민 건강증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기록·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범진)

-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없 음

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